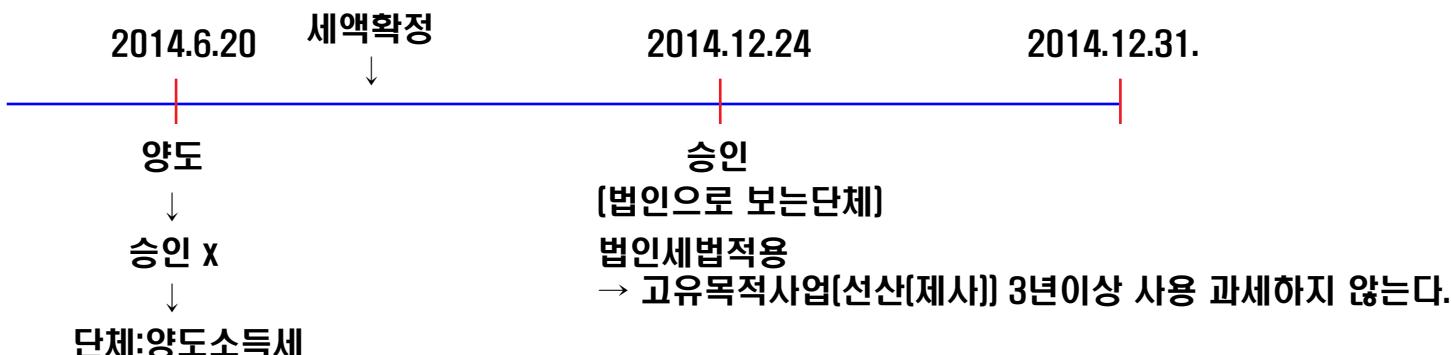


2. 종종(법인으로 보는 단체)

- [1] A종종은 1981년 8월 11일에 종종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
2014년 6월 20일에 B건설회사에 협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110억원에 양도하였다.
- [2] A종종은 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종 계좌에 입금하여 종종의 손익으로 한 후 10억원을 제외한
100억원을 종종원에게 분배하였다.
- [3] 한편, A종종은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2014년 12년 24일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
국세기본법상 '법인으로 보는 단체'로 승인을 받았다.



법에 보면 설립 등기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(1년이 넘지 않는)은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한다.

법인세법 제6조 [사업연도]

-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[定款]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.
다만,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[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[사업연도의 개시일]]으로 정한다.

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[사업연도의 개시일]

-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[2013.02.15 개정]

1.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.

다만, 법 제2조[정의]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의 경우에는
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.[2019.02.12 단서개정]

- 가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[1998.12.31 개정]
- 나.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
그 허가일 · 인가일 또는 등록일 [1998.12.31 개정]
- 다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
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[1998.12.31 개정]
- 라.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[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]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[2005.02.19 법명개정]

2.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[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]에 따른 국내사업장(이하 "국내사업장"이라 한다)을 가지게 된 날 [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[사업연도]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] [2013.02.15 개정]

-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
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
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.
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.[1998.12.31 개정]

* 반대의견

- ① 양도소득세의 세액확정 [8월말일] 이미확정 된 세액이 취소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.
② 최초사업연도 손익 포함 의미[이유] : 발기인[설립자]의 손익은 아니다.
 실질적으로 법인에 손익에 귀속 발기인의 손익으로 하는 것의 불편함 해소

* 법원 찬성 : 이걸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.